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년 12월 3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국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1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도로명 주소 안내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보상 지급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 주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II. 주요내용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각 동의 주소지 관할 통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III. 검토의견

동 개정 조례안은 일반국민이 주소만으로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토지 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고, 2012.1.1부터 본격 시행에 앞서 주민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변경된 주소 체계를 주소지 관할 통장을 통하여 방문 고지하여 알리고 이에 따른 실비보상 차원의 수당을 통장에게 지급하고자 근거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관 계 법 령 〉

도 로 명 주 소 법

[(타)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74호]

- 제18조 (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 로 명 주 소 법 시 행 령

[일부개정 2010.4.7 대통령령 제22110호]

- 제23조 (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설치를 마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고지를 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해당 시·군·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고지 대상자를 두 번 이상 방문하였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방문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 ② 시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를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명주소의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고시 예정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사실이 고지 대상자에게 고지됐음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변경된 도로명주소에 따라 정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주민등록의 변경요청을 한 사실을 해당 주소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고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